별첨 1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용

○ 첨단산업군 기업육성을 위한 묶음 지원

구분	주요내용		
지원형태	·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기업 자율에 맞게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 묶음 지원 실시		
	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	시장확대 중심의 사업화지원	
지원	· 실증용 시제품 제작지원	· 기업 및 제품 홍보수단 제작 지원	
프로그램	·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	· 테크니컬 바이어 미팅 지원	
	· SW 품질인증 획득 지원	· 국외 경쟁제품 벤치마킹 지원	
지원규모	· 기업당 최대 14,000천원 이내(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) · 기업부담금은 현금으로 계상(최종 지원금액의 15% 이상)		

-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

지원프로그램	내용		
실증용 시제품 제작지원	·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제품화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, 양산품 단계의 규모 확대 지원		
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	· 국내·외 제품 판매를 위해 R&D 현장기술연계 국내·외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·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		
SW 품질인증 획득 지원	· SW 품질인증 획득을 통해 4차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시장 진출/확대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S/W 개발 및 관리를 영위하 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해 순수 S/W 품질 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료, 출원료, 대행료 등 수수료 비용 지원		

- 시장확대 중심의 사업화 지원

지원프로그램	내용			
기업 및 제품 홍보수단 제작 지원	· 지역 내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제품 홍보물(브로슈어, 카탈로그, 홈페이지 개보수) 제작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홍보와 매출 증대 및 기업브랜드가치 강화			
테크니컬 바이어 미팅 지원	 자립성장 및 독자 해외마케팅 능력 보유 기업과 수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기업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 미팅 지원 B2B 산업 마케팅의 필수 요소인 지속적인 신뢰감 형성, 고객 관리를 통한 바이어 니즈 반영을 위한 지속적 미팅 지원 			
국외 경쟁제품 벤치마킹 지원	· 국외 강소기업 방문 및 기술분석 등을 지원하여 운영노하우, 적용기술 및 기법, 4차산업 최신 트렌드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기술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하도록 현장교육 및 방문을 지원			

발 1-1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용

○ 프로그램 신청 시 유의 사항

프로그램명	유의사항					
공통	○ 사업비 불인정 공통 항목 - 임차료,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, 차량보험료, 경상피복비 -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,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- 출장 경비, 식대, 인건비, 선물 구입비, 공공요금(수도세, 전기세 등) -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-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- 사업비 변경, 이월 등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- 참여기업의 역할이 불확실할 경우(ex. 3자 위탁개발 등) - 자산형 장비구축(ex. 설비구축 등), 주업종불일치(내부자거래), 단순자금 지원, 단순 원자재 조달,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비 - 상품성·단발성(일회성 판매용)·판매용 제품 제작 비용					
실증용 시제품 제작지원	 ○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, 기존상품 개선, 제품 고급화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 ○ 단일거래처 발주는 사업비 규제 항목으로, 참여기업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한 자료 증빙을 통해 사용 가능 					
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, SW 품질인증 획득 지원	○ 국내·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인증 지원 ○ 금액이 과다할 경우 원가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음					
테크니컬 바이어 미팅 지원 및 국외 경쟁제품 벤치마킹 지원	○ 금액이 과나할 경우 원가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음 ○ 외유성 출장, 참여기업의 일반 국외 업무의 연장(대리점 방문, 거래선 인사) 등 지원 제외 [국외 방문 바이어 미팅 & 국외 벤치마킹 방문] ○ 1회 최대 지원 한도 : 4백만원 이내 ○ 왕복항공료 기준 - 일반석 등급 좌석만 지원 - 건당 2인 한도(2인 이상 출장 시 역할분담이 명확한 업체 내 품의서 필히 첨부) - 비즈니스석 이상 등급 시 지원 제외 - 국내만 이동 시 지원 제외 ○ 숙박비 - 지역별 별도 내규(아래 표 참조) 국가 지역별급지 1인 2인 국가 적용기준 A지역 210\$ 350\$ 유럽 미주, 호주, 대도시 (중국 동남아 제외) - 저지역 135\$ 230\$ A지역 미포함 국가 도시 (비이어 초청 시 B지역 적용) ○ 해외 전시회 참가, 수출 상담회에 참가에 따른 바이어미팅은 지원제외 - 벤치마킹으로 전시회 참가 시 참가업체와의 실제 상담 및 교육자료 필수 ○ 결과보고서 작성 시 미팅사진, 실적, 효과, 결과에 대한 내용 필수 기록 ○ 환율은 숙박비 결제일의 매매기준율 적용 ○ 요청 시 바이어와의 이메일 송수신 또는 자체 출장결과보고서 제출					

[해외바이어 초청 및 국외 우수제품사 전문가 초청]

- 1회 최대 지원한도 : 4백만원 이내
- 왕복 항공료
- 1인 왕복항공권 지원(일반석, 이동시 순로 기준)
- 한국 내 구입 항공권만 인정, 현지구입 후 비용지원 불인정
- 숙박비
- 1인 3박 한도 지원(1일 20만원 한도)
- 호텔의 경우 일반실 기준 인정(울산 지역만 인정)
- 통역비
- 1일 30만원, 최대 3일, 통역업체를 통한 통역만 인정.
- 최초 2시간 15만원(영·중·일)/20만원(기타), 추가 1시간당 3만원(공통)

별첨 2 제출서류 목록

순번	제출자료	내 용	비고
1	지원신청서	1부	직인날인된 원본은 발표평가 시 제출
2	사업계획서	1부	-
3	견적서	1부	사업비 구성 증빙용
4	최근 3년간 재무제표	1부	2022년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5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	-
6	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1부	-
7	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	1부	-
8	사업자등록증명원	1부	사업장 소재지 확인
9	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	1부	-
10	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: 사살중명(사업자등록변경내역)	1부	사업장 소재기간 확인

별첨 3 사업공고 관련 법령 및 규정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,
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항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
 - 1.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- 2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 - 3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 - 1.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 - 2.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 - 3.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 - 4.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 -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 - 4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 - 5.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-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.
- O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.
- O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.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.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 -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 -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
 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 -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
 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
 -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